

[]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
[] 등록취소 신청서
[] 개업*·휴업·폐업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※ 개업은 휴업 후 업무재개를 의미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일
신고인 (신청인)	성명	(한글)	등록번호 제 호
	전화번호		
	주소		
등록사항 변경 신고	변경사항	변리사 성명·주소·전화번호·학력 및 전공·주요경력, 사무소(법인) 명칭·주소·전화번호·팩스번호, 변리사 인감 등	
	변경내용		
등록취소 신청	사유		
개업(업무재개)/ 휴업/폐업 신고	구분	[]개업(업무재개) []휴업 []폐업	
	신고내용		

「변리사법」 제5조의3제2호·제6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·제9조의2·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등록사항 변경 신고, [] 등록취소 신청, [] 개업(업무재개)·휴업·폐업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대한변리사회 귀하

첨부서류	휴업 신고 시 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 절차

